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213 호 2020. 1. 15.(수)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59호[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59호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신천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 별표 1, 2 개정

3. 관계법령 :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, 지방자치법 제4조의 2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(화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참조 : 주민소통실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 출 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264, 팩스번호 : 052)241-7269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」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"신천동 1~87, 241~313, 745-2~745-30, 745-34·35, 745-39~745-41, 745-54~745-58, 745-74·75, 745-77~745-79, 745-83~745-101, 745-103~745-111, 745-118·121, 745-123~745-126, 745-128, 745-131~745-134, 745-139·140·142·143, 745-145~745-147, 745-150·152·155·156, 745-158~745-163, 745-165~745-170"를 "신천동 1~87, 241~313, 745-2~745-30, 745-34·35, 745-39~745-41, 745-54~745-58, 745-74·75, 745-77~745-79, 745-83~745-101, 745-103~745-111, 745-118·121, 745-123~745-126, 745-128, 745-131~745-134, 745-139·140·142·143, 745-145~745-147, 745-150·152·155·156, 745-158~745-163, 745-165~745-170, 808-1~808-7, 809-1~809-5, 810-1~810-6, 811-1~811-8, 812-1~812-5, 813-1~813-9, 814-1~814-13, 815-1~815-11, 816-1~816-9, 817-1~817-12, 818-1~818-10, 819-1~819-11, 820-1~820-9, 821-1~821-9, 822, 823-1~823-9, 824-1~824-3, 825-1~825-7, 826-1~826-7, 827-1~827-27, 917"로 한다

별표 2 중 연번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	매곡동 745-5, 745-13~745-15, 746-3~746-7, 747, 747-5, 748-4, 756-5~756-7, 758-1, 759-1~759-2, 760-1~760-3, 761, 762, 762-1, 765-1, 766-3~766-4, 766-7~766-9, 769-5, 771-12, 777-1~777-9, 778, 778-1~778-2, 779-1, 779-4, 780-12, 818-2, 837-1(23,313제곱미터)를 신천동으로 편입한다.
---	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				
[별표 1]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			[별표 1]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						
행정 동명	동장 정수	관할구역	행정 동명	동장 정수	관할구역				
농소 1동	1	○창평동, 호계동 일원 ○매곡동 일원(392~615, 650~654, 795-1~795-77, 795-102~795-115, 855, 857, 918-1~918-19, 919-1~919-11, 919-13~919-20, 922-1~922-13, 922-15~922-16, 923-1~923-14, 923-17~923-30, 924-1~924-10, 924-11, 924-14, 925-1~925-9, 925-15, 926-1~926-7, 927-1~927-14, 928-1~928-2, 938-1, 938-8, 939-1~939-4, 940, 941, 942제외) ○신천동 1~87, 241~313, 745-2~745-30, 745-34·35, 745-39~745-41, 745-54~745-58, 745-74·75, 745-77~745-79, 745-83~745-101, 745-103~745-111, 745-118·121, 745-123~745-126, 745-128, 745-131~745-134, 745-139·140·142·143, 745-145~745-147, 745-150·152·155·156, 745-158~745-163, 745-165~745-170	1	1	○ ----- ○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○ 신천동 ----- ----- ----- 808-1~808-7, 809-1~809-5, 810-1~810-6, 811-1~811-8, 812-1~812-5, 813-1~813-9, 814-1~814-13, 815-1~815-11, 816-1~816-9, 817-1~817-12, 818-1~818-10, 819-1~819-11, 820-1~820-9, 821-1~821-9, 822, 823-1~823-9, 824-1~824-3, 825-1~825-7, 826-1~826-7, 827-1~827-27, 917				
		농소 2동			1	○매곡동 392~615, 650~654, 795-1~795-77, 795-102~795-115, 855, 857, 918-1~918-19, 919-1~919-11, 919-13~919-20, 922-1~922-13, 922-15~922-16, 923-1~923-14, 923-17~923-30, 924-1~924-10, 924-11, 924-14, 925-1~925-9, 925-15, 926-1~926-7, 927-1~927-14, 928-1~928-2, 938-1, 938-8, 939-1~939-4, 940, 941, 942 ○신천동 88~240, 314~316, 379~381, 382~745, 745-1, 745-31, 745-36~745-38, 745-62~745-48, 745-50~745-53, 745-59·60, 745-62~745-73, 745-112~745-115, 745-117·122·127·129·130, 745-136~745-138, 745-164, 782, 786, 799 ○중산동 일원	1	1	○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○ -----
						농소3동 1 (생략)			농소3동 1 (현행과 같음)
						강동동 1 (생략)			강동동 1 (현행과 같음)
						효문동 1 (생략)			효문동 1 (현행과 같음)
						송정동 1 (생략)			송정동 1 (현행과 같음)
						양정동 1 (생략)			양정동 1 (현행과 같음)
염포동 1 (생략)	염포동 1 (현행과 같음)								
[별표 2]			[별표 2]						

연번	변경내역
1	(생략)
2	(생략)
3	(생략)
4	(생략)
5	(생략)
6	(신설)

연번	변경내역
1	(현행과같음)
2	(현행과같음)
3	(현행과같음)
4	(현행과같음)
5	(현행과같음)
6	매곡동 745-5, 745-13~745-15, 746-3~746-7, 747, 747-5, 748-4, 756-5~756-7, 758-1, 759-1~759-2, 760-1~760-3, 761, 762, 762-1, 765-1, 766-3~766-4, 766-7~766-9, 769-5, 771-12, 777-1~777-9, 778, 778-1~778-2, 779-1, 779-4, 780-12, 818-2, 837-1(23,313제곱미터)를 신천동으로 편입한다.

관계법령

□ [지방자치법 제4조의 2]
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[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]

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·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·면·동에 걸쳐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제1호

2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.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작성자

- 주민소통실 7급 김찬수 241-7264